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4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상욱,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호)

2. 주요내용

-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호)
-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을 명시함(안 제28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 및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